Yeosu
Web Contents

2024년 04월 29일 09시 17분

목차

목차 2
식품/제조가공업 신고 3
식품/제조가공업 신고 3

식품/제조가공업 신고

영업의정의	식품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
건물용도	공장(식품공장, 식품제조업소)
처리기간	3일
검토사항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하수도법」, 「농지법」, 「학교보건법」, 「옥외광고물등 관리법」, 「하천법」,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, 「관광진흥법」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, 「청소년보호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주차장법」, 「지방세법」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검토
구비서류	▪ 교육이수증 ▪ 건강진단결과서 ▪ 제조·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▪ 수질검사시험성적서 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)
수수료	28,000원
관련서식	식품 영업등록신청서(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 2) hwp 다운로드
시설기준	여수시청 > 분야별정보 > 의료/식품/위생 > 식품/위생 > 시설기준 안내 참조
영업허가 등의 제한	식품위생법 제38조(영업허가 등의 제한)에 해당하는 경우 (다만,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)
처리절차	신고서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교부 →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조사
관련법규	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
문의처	식품위생과 061-659-4225

COPYRIGHT © YEOSU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